

인지세 안내

「인지세법」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'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'로서 과세대상이며,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공급계약서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각각 50%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※ 중간전매건에 대해서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별도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 하여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- 전자수입인지는사업주체에서선납부후,전자수입인지를계약자에게교부,계약자가1/2금액을사업주체계좌로 납부합니다.
- 고객 부담금 미납부시 전자수입인지는 고객에게 교부되지 않으며,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 책임입니다.
- ※ 고객이 별도 구매하여 첨부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- ※ 중간 전매건에 대해서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별도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
금액별 세액

구분	납부세액		본인부담금	비고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)	1,000만원 ~ 3,000만원 이하	2만원	1만원	
	3,000만원 ~ 5,000만원 이하	4만원	2만원	
	5,000만원 ~ 1억원 이하	7만원	3.5만원	
	1억원 ~ 10억원 이하	15만원	7.5만원	*사업주체 선 구매 (7.5만원 사업주체에게 납부)
	10억 초과하는 경우	35만원	17.5만원	

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- 납부기한 :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

※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8조 3항

인지세 납부 계좌

구분	고객 부담 금액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
인지세 납부 금액 1/2	75,000원	신협	131-022-578274	(주)씨앤위